(全매체) 2014년 12월 23일(화) 11: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mba.go.kr

성장징검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보 도 자 료

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, 30년의 성장

• 문의 : 중기청 시장상권과 조재연 과장(042-481-4559), 강병택 사무관(4563)
기재부 재정집행관리팀 이명선 과장(044-215-5330), 이양현 사무관(5334)

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'선택과 집중' 지원키로

1 [개요] 언론 등 지적에 따라 현장점검

1 정부는 12.22.(월)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**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**를 개최하여 전통시장 현대화사업* 제도개선 추진

* 전국 전통시장(총 1,372개)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주차장, 진입로, 아케이드 등 설치를 지원(국비:지방비:자부담 = 6:3:1)

○ '02년부터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을 위해 **총3.3조원**(1,084개)을 투입했지만 **매출액이 감소*** 하고 **국회·언론도 사업효과에 의문****제기

* 전통시장 매출액(조원): ('05) 27.3 → ('07) 22.5 → ('09) 22.0 → ('11) 21.0 → ('13) 19.9

** '14.9.29일 중앙일보 / '12.5월 국회 예산정책처 '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'

○ 이에따라, 최근 2개월(10.13~12.12일) **기획재정부, 중소기업청 및 지자체 합동**으로 **전국 17개 시도**의 전통시장 사업을 **현장점검**

2 제도개선안을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향후 **지자체, 상인, 전문가 등 의견수렴**을 거쳐 확정 (관련 지침개정, '15년초)

2 [문제점] 충분한 준비 부족

1 **(일률적 추진)** 점검결과 **자생력 강화보다**는 주차장 설치 등 **'사전 준비 없는 일률적 사업추진'**이 가장 큰 문제

○ 사업 선정평가시 **자생력 강화**를 위한 평가배점이 낮고, 사업추진 심의위 구성에 **이해관계 있는 상인이 참여**하여 공정성 저해사례

○ 사전준비 부족으로 **시설부지와 자부담(상인) 미확보, 집행실적 저조**

○ **사업추진위원회** 등 구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상인간 분쟁조정이 어렵고, 추진과정에서도 **민원 다수발생**

2 **(무분별한 집행)** 충분한 준비없는 추진은 **'무분별한 집행'** 야기

○ 계획성 부족으로 추진과정에서 시·도 및 지방중기청 승인없이 **무분별한 사업변경**(사례 : 주차장 → 다목적광장) 사례 발생

○ 신규설치한 **시설활용이 낮고**(고객지원센터 운영실적 미미 사례), **예산 집행 잔액을 국고반납하지 않고 무단전용**('10년 이후 총46억원 미납)

3 [제도개선] 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에 '선택과 집중' 지원

1 **(제도개선)** 이에따라 정부는 **자생노력하는 전통시장**에 대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**'선택과 집중'**하여 지원키로 결정

○ **(자생력)** 전통시장의 **자생력 제고**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상인교육, 자체사업실적, 경영활성화 등 **상인 자구노력 배점확대**(25→40점)

○ **(컨설팅) 외부전문가들**이 문제점 진단후 경쟁력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**'先진단 後지원' 제도를 '15년부터 시범실시**하고 향후 확대

○ **(사전준비) 주차장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**하거나 **점포별 자부담 금액을 확정한 시장**을 **우선선정**하여 원활한 사업집행을 유도

2 **(집행관리)** 또한 **사업추진과정**과 **사후관리 강화**

○ 무분별한 사업계획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**5천만원을 초과하는 변경**의 경우 **지방중기청장이 승인**토록 개선(현행 : 1억원 초과)

○ **집행잔액**은 무계획적인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**이듬해 5월까지 반납**토록하고 미이행시 지원중단

○ **방문고객 증대를 위해** 운영사업(5억원 이상)후 5년간 **지원효과평가서 제출 의무화** 등 사후관리 강화

4 향후계획

1 노형욱 차관보는 옛날 5일장 열리는 날 장에 못가면 머리싸매고 눕는 병을 **'돌뱅이 병'**이라 했을 만큼 전통시장은 즐거웠다며, 정부 지원과 함께 시장의 자생노력이 중요함을 강조

2 금번 제도개선으로 전통시장의 **자생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제고**될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향후 다른 재정사업에도 문제 제기가 있을 경우 국회, 언론,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반영하여 **현장점검**하고 **재정관리점검회의**에 상정하여 개선토록 할 계획

※ 붙임: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방안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강병택 사무관(☎ 042-481-45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|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방안

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방안

2014. 12.

기 획 재 정 부
중 소 기 업 청

목 차

1. 추진배경 ····· 1

2. 그간 제도운영상 문제점(합동점검 지적사항 위주) ····· 2

3.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방안 ····· 4

4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7

1 추진 배경

□ 최근 10여 년간('02~'13) 1,045개 전통시장에 3.3조원(국비+지방비)이 지원되었으나, **전통시장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감소**

* 전통시장 매출액(조원): ('05) 27.3 → ('07) 22.5 → ('09) 22.0 → ('11) 21.0 → ('13) 19.9

□ 지난 9월 「3조원 넘는 전통시장 지원금 줄줄 샜다(중앙일보)」 언론보도 이후 **전통시장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 대두**

* '14.9.29. 중앙일보,「3조원 넘는 전통시장 지원금 줄줄 샜다」보도

○ '12.5월에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**사업추진체계 정비가 필요**하다는 문제 제기

* '12.5월, 국회 예산정책처,「전통시장육성사업 평가」

□ 그간 중기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나, **지자체의 예산집행 및 관리 부실** 등의 **문제점 해결에 한계**

<참고> 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 사항(중기청 기추진)

① 사업변경 절차 간소화: 중기청 심의→지방중기청장 심의('09년) ② 사업추진시 상인 동의율 상향(60%→80%), 아케이드는 건물주 전원 동의, 사업신청시 부지매각 동의서 제출의무화('11년), ③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전문가 현장진단 및 선정협의회 개최('11년) ④ 장기사업의 경우 단계별 예산 분할편성 의무화 및 건축허가, 소방·교통·지하매설물·디자인 심의 등 각종 인·허가 일괄심의 의무화('12년)

□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, 중소기업청 및 시·도 **합동점검반을 구성, 전통시장 재정집행 및 사업운영 실태를 점검**

* '14.10.13.~12.12.(2개월), 77개 전통시장(최근 3년간 재정투입 30억원 이상 등)

⇒ **금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**하고 **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**

2 그간 제도운영상 문제점(합동점검 지적사항 위주)

1 현행 지원대상 선정체계는 시장의 경영혁신 유도 기능 미흡

○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평가배점* 중 상인들의 자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**경영활성화에 대한 배점이 낮아 조정 필요**

* 시설현대화 평가배점(100점): 사업타당성 40점, 추진가능성 25점, 경영활성화 25점

○ 지원대상 시장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상인연합회 시·도 지회장이 시·도 심의위원으로 참여시 **대상 선정의 공정성 저해 우려**

* 심의위 구성: 상인연합회 지회장, 시·도 및 지방중기청 담당과장, 외부전문가 등

2 시장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 미흡

○ 종합적인 시장 현황 진단 후 특성에 따라 **노후시설 개선, 기반시설 설치** 등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**나눠먹기식 지원**

* 시설현대화사업('02~'14): 전통시장 1,372개 중 1,084개(79%) 지원

○ 시장별 특성, 취약분야 등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**고객 및 매출증가 등 성과창출에 중점을 둘 필요**

3 부지매입 및 민간자부담 등 미이행으로 사업 지연

○ 주차장 등 **부지매입** 또는 **민간자부담**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**관련 절차 미이행, 자부담 회피** 등으로 사업 지연

* '13년 예산 1,430억원 중 915억원을 집행(실집행률 64.0%), '12년 64.1%
* 집행부진 해소를 위해 주자장 건립은 '15년부터 소상공인지원기금으로 변경 운영

- 인허가·입찰·설계·시공 등 **절차이행**, 지방비 및 민간 **자부담액 확보 지연**, 공사중 **민원발생** 등의 **집행부진 사유 해소 노력 미흡**

④ 잦은 사업변경으로 예산낭비 및 효율성 저하

○ **설계변경의 필요성·효과성**을 고려하지 않고 **무분별한 사업변경**으로 **불필요한 예산집행 초래**

- 1억원 이상 **사업변경시 사전 승인**(시·도 및 지방중기청)을 받아야 함에도, **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는 사례 빈번**

【사례】 주차장을 다목적광장으로 변경

○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집행 가능기간(최대 3년간)이 지난 뒤 남아있는 **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전용**

【사례】 '14.12월 현재, 8개 지자체에서 837백만원 미반납

⑤ 시설물 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

○ **전통시장의 입지, 고객의 특성** 등에 대한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 없이 **보여주기식으로 일단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낭비 초래**

- **시설물 설치 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**하거나, 상인회에 **무상으로 사용허가**를 내주는 등 **시설운영 및 사후관리 부실**

【사례】 고객지원센터 개소식 후, 상인대학 1회 개최 외 운영실적 전무

⑥ 상인간 갈등으로 사업추진 지연

○ **시설 설치에 따른 상인간 이해관계 충돌**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**예산 집행부진 초래**

【사례】 시설 설치에 따른 임시상가 입점시 상인간 점포 자리다툼 등

○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(10억원 이상)은 **추진위원회를 시·군·구에서 구성 및 운영**하여야 하나 **구성하지 않은 채 사업 추진**

○ 주차장 운영비용 증가로 **적자 발생시 보전대책, 수익금 사용** 등에 대해 위탁운영 주체인 **상인회와의 협의기구 미비**

3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제도개선방안

〈 요 약 〉

1 전통시장의 **경영혁신을 통한 자생력 제고**를 위해 시설현대화는 **선택과 집중을 강화**하고 **시장의 소프트파워를 극대화**

* (시설현대화) 아케이드, 주차장, 진입로, 화장실, 전기・가스・소방시설 등
* (경영혁신) 공동마케팅, 공동상품권 발행, 상인교육, 문화관광형시장 등

○ 지원대상 선정배점에 **경영활성화 비중을 대폭 확대**(25→40점)

* (경영활성화 항목) 상인교육, 카드사용률, 상인회 가입률, 상인회 자체사업 실적 등

2 **전문가들**이 시장을 방문하여 **문제점을 종합진단**하고, **최적의 시장활성화 지원시책**을 제시하는 **先진단 後지원 시스템 구축**

○ 현재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**전통시장 중 5개를 선정**하여 **종합진단을 시범 시행 후 확대** 추진

3 주차장 등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**부지매입 등이 완료된 시장을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**하는 등 **민간의 책임 강화**

○ 민간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신청시 점포별 또는 면적당 **자부담 금액을 확정하여 사업 신청**토록 의무화

4 무분별한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 변질 및 **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**하기 위해 **승인금액 기준 변경** 등 **집행관리 강화**

○ 지방중기청 승인 대상 사업변경 금액 범위를 하향 조정

* 현행: 5천만원 이하(시・군・구), 1억원 이하(시・도), 1억원 초과(지방중기청)
⇒ (개선) 3천만원 이하(시・군・구), 5천만원 이하(시・도), 5천만원 초과(지방중기청)

5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은 5년간 매년 **지원효과 평가서 제출을 의무화**하는 등 **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**

○ 사업신청시 설치예정인 **시설물의 관리운영계획서 첨부를 의무화**

* 예) 주차장, 고객쉼터, 놀이방, 에스컬레이터, 상인교육장 등

1 전통시장의 경영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자생력 제고

○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시 **상인들의 자구노력(경영활성화) 관련 지표의 평가점수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대**

* 시설현대화 평가배점(100점): 경영활성화(25→40점), 사업타당성 등(75→60점)
* 경영활성화 평가항목: 상인교육, 카드사용률, 상인회 가입률, 자체사업 실적 등

○ '15년 전통시장 지원예산 중 **시장경영혁신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**

* ('14년) 696억원 → ('15년) 1,108억원 (59.2% 증)

2 '나눠먹기식' 지원에서 '선택과 집중' 으로 평가체계 개선

○ 「先 종합진단 後 지원」하는 **전통시장 종합진단 시범 시행**

- 전문가들이 시장의 상황을 종합진단(취약점 및 강점)하여 **전통시장 장단기 시장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**

- 현재까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**전통시장 중 5개를 선정**하여 **시범 시행 후 확대 추진**

○ 현행 '시장활성화 컨설팅사업'을 강화하여 종합진단을 통해 **최적의 시장활성화 지원시책을 상인회 또는 시·군·구에 제시**

* (현행) 시설 또는 경영전문가 1인 3일간 → (개선) 시설·경영전문가 2인1조 5일간

○ 시·도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**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전국상인연합회 시·도 지회장의 참여를 배제**하도록 운영지침 개정

* (현행) '전국상인연합회 시·도 지회장' → (개선) '사업참여가 없는 상인회 회장' 중 1인 참여

3 부지매입 및 민간자부담 등 민간의 책임 강화

○ 주차장 등 부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, **사업신청 이전에 부지매입 또는 협의가 완료된 시장을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**

- 사업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부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장에 대한 예산배정 중단

○ 민간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 신청시 **점포별 또는 면적당 자부담 금액을 확정하여 사업 신청토록 의무화**

* (현행) 자부담 총액 동의서 → (개선) 점포별 또는 면적당 자부담 금액 확정 및 동의서 제출

4 사업변경 등 집행관리 강화

○ 무분별한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사업목적 변질 및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**승인금액 기준 강화**

* (현행) 5천만원 이하(시・군・구), 1억원 이하(시・도), 1억원 초과(지방중기청)
⇒ (개선) 3천만원 이하(시・군・구), 5천만원 이하(시・도), 5천만원 초과(지방중기청)

- **사업내용 전체를 변경할 경우**에는 **중기청 승인 후 시행**토록 개선

* (현행) 사업내용 전체변경(예, 주차장→다목적광장)은 시・도 승인
⇒ (개선) 지방중기청 승인으로 변경

- 사업변경 승인 절차를 미이행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**최장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**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개정

○ **사업종료 다음년도 5월말까지 집행잔액 반납 의무화**

- 미반납한 시・군・구에 대해서는 **예산 교부를 중단**하고, **상계・반납 완료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**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 개정

* '10년 이후 집행잔액 미반환액('14.12월 현재): 4,612백만원(41개 시・군・구)

5 시설 활용도 제고 등 사후관리 강화

○ 시·군·구에서 중기청에 사업 신청시 설치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**'시설물 관리운영계획서' 첨부를 의무화**

* 예) 주차장, 고객쉼터, 놀이방, 에스컬레이터, 상인교육장 등

○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경우, **사업 종료후 5년간 매년 지원효과 평가서**(시설물의 경우 활용실적 포함) **제출을 의무화**

- 지방중기청이 매년 사업완료 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집행 점검시 평가서를 제출토록 하고, **불이행시에는 신규사업 참여 제한**

6 추진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

○ 시장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*에 대해 **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**

* 아케이드·화장실 설치사업, 총 사업비 10억 이상 사업

- 사업추진 全 단계에 걸쳐 **이해당사자들간 갈등 해소 및 의견 수렴**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

○ 공설시장 재건축, 주차장 건립 등 **토지나 건축물의 보상**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신청 전에 **사업설명회·공청회 등을 의무화**

4 향후 추진계획

○ 지자체, 상인회,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(중기청, '15.1월)

○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 및 시행(중기청, '15. 1/4분기)